

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고문변호사에 대한 월정 수당액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함

2. 주요골자

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동 조례에 월정액(예. 월100,000원이하의)으로 명시하던 것을 삭제함

3. 근거법령

해당 없음

참 부 : 1.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
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수당) ①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0,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수당) ①..... (삭제)</p>